

서울시 에너지복지 정책 방향

2010. 2. 22 제57호

진상현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

박은철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

〈 목 차 〉

요약

- I. 서울시의 에너지소비 현황
- II. 해외 도시의 에너지복지 정책
- III. 서울형 에너지복지 전략

요 약

2004년부터 시작된 신(新)고유가로 인해 유가가 배럴당 150달러까지 급등하면서 세계적으로 에너지빈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 정부도 2007년 에너지복지 원년을 선언하며 2016년까지 에너지빈곤을 해소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에너지빈곤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서울시 차원의 에너지복지 정책에 대한 요구도 점차 커지고 있다.

서울시 에너지빈곤 가구는 전체 가구의 10.3%

소득대비 에너지 비용 부담이 10% 이상인 가구로 정의되는 에너지빈곤 가구는 서울시 전체 가구의 10.3%에 달한다. 특히 소득 1분위 계층의 69.3%가 에너지빈곤 가구에 해당되는 등 저소득 가구의 에너지빈곤이 심각한 상황이다. 현재 서울시 저소득 가구에게 제공되는 에너지복지는 단전유예와 가스요금 할인 등이 주로 시행되고 있다. 그렇지만 저소득 가구는 가격할인과 단열창호공사, 수혜대상 확대를 가장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방정부를 배제하고 지식경제부와 에너지공기업을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된 결과 비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에너지 빈곤가구는 정책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해외 도시의 에너지복지 정책

해외 선진도시들은 1970년대 석유파동 이후 지역적 특성에 맞춰 에너지복지 정책을 추진해나가고 있다. 노후건물과 임차건물이 많은 뉴욕주는 에너지효율 개선과 주거복지를 결합한 주택 단열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주거비 부담이 큰 런던시는 중앙정부와 차별화된 에너지빈곤 기준을 통해서 수혜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브라질은 저효율 구형 냉장고를 고효율 신형 냉장고로 교체하는 에너지복지 사업을 통해서 에너지비용 절약, 온실가스 감축, 그리고 생활지원금 절감이라는 1석 3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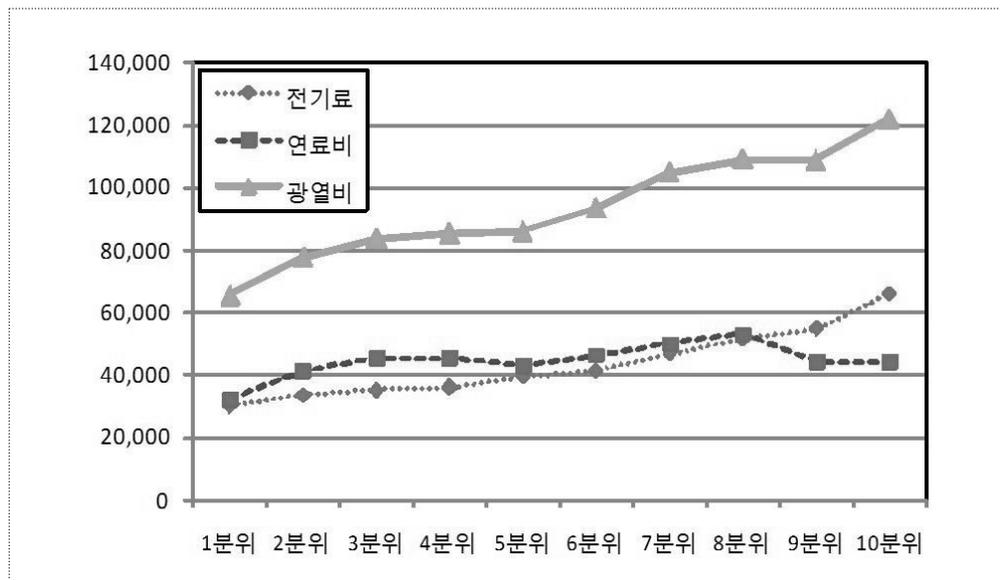
서울형 에너지복지 실천전략의 수립

서울시도 뉴욕이나 런던처럼 지역 특성을 반영한 서울형 에너지복지 전략을 우선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주택효율 향상을 통해 난방에너지를 개선한다. 저소득 가구는 주로 난방 효율이 낮은 낡은 임대건물에 거주하므로 난방 복지를 최우선 과제로 시행한다. 둘째, 가전제품 효율 향상을 통해 전력소비를 절감한다. 특히 전력소비가 많은 냉장고를 중심으로 가전제품 교체사업을 시행한다. 셋째, 저렴한 에너지원인 도시가스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을 추진한다. 끝으로 에너지복지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를 집행기관으로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I. 서울시의 에너지소비 현황

에너지 소비의 양극화

- 에너지 비용은 소득별로 두 배 가까운 격차 존재
 - 에너지 소비(광열비)는 소득이 증가할수록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나 하위 10% 가구의 에너지 소비는 상위 10% 가구의 54% 수준에 불과한 실정
 - 광열비(光熱費)는 전기, 가스, 석유 등을 포괄하는 에너지 비용
 - 에너지 소비의 양극화는 주로 전기 소비의 양극화 때문이며, 하위 10% 가구의 전기요금은 상위 10% 가구의 46% 수준
 - 반면에 연료비는 소득별 차이가 없는 필수재이지만 균등한 가격부과체제로 인해 경제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에서 연료비 지원이 필요



단위: 월평균 비용(원)

자료: 통계청, 2008, 「가계조사(서울)」.

[그림 1] 소득분위별 광열비 지출구조

- 서울의 에너지빈곤 가구는 전체 가구의 10.3% 수준
 - 에너지빈곤 가구는 대체로 '소득대비 에너지비용 부담이 10% 이상인 가구'로 정의되며, 서울시의 에너지빈곤 가구는 전체 가구의 10.3%
 - 영국은 가구 총순소득(full income)의 10% 이상을 냉·난방비로 지출하는 가구를 에너지빈곤층으로 정의
 - 미국은 에너지비용이 가구소득의 10.9% 이상인 경우 에너지부담(energy burden)이 높은 것으로 정의
 - 서울의 에너지빈곤층은 소득 4분위 이하 계층
 - 1분위 계층은 69.3%, 2분위 계층은 27.5%가 에너지빈곤 가구로 추정

<표 1> 서울시 소득분위별 에너지빈곤 가구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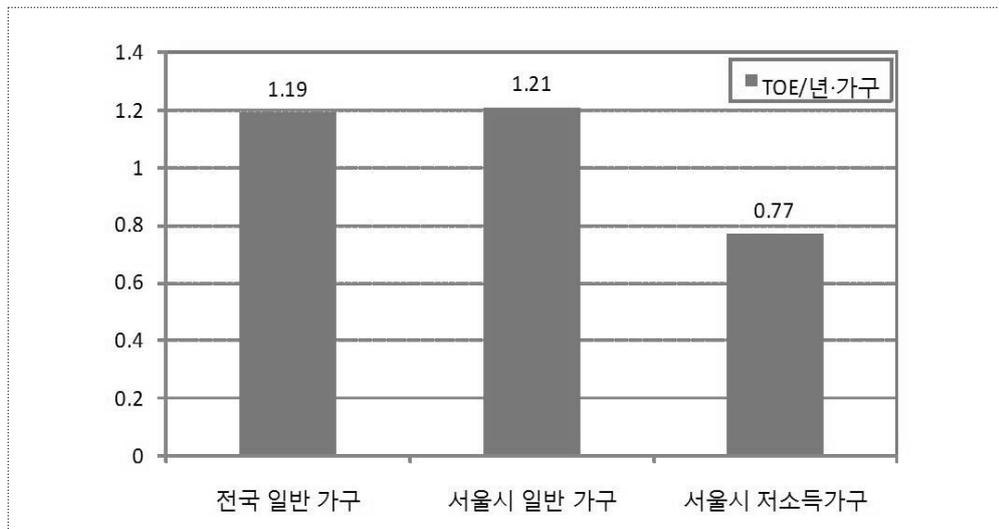
(단위 :%)

구 분	정상 가구 비중	에너지빈곤 가구 비중
1분위	30.7	69.3
2분위	72.5	27.5
3분위	96.2	3.8
4분위	98.1	1.9
5분위	100.0	
6분위	100.0	
7분위	100.0	
8분위	100.0	
9분위	100.0	
10분위	100.0	
전 체	89.6	10.3

자료: 통계청, 2008, 「가계조사(서울)」.

저소득 가구의 에너지 소비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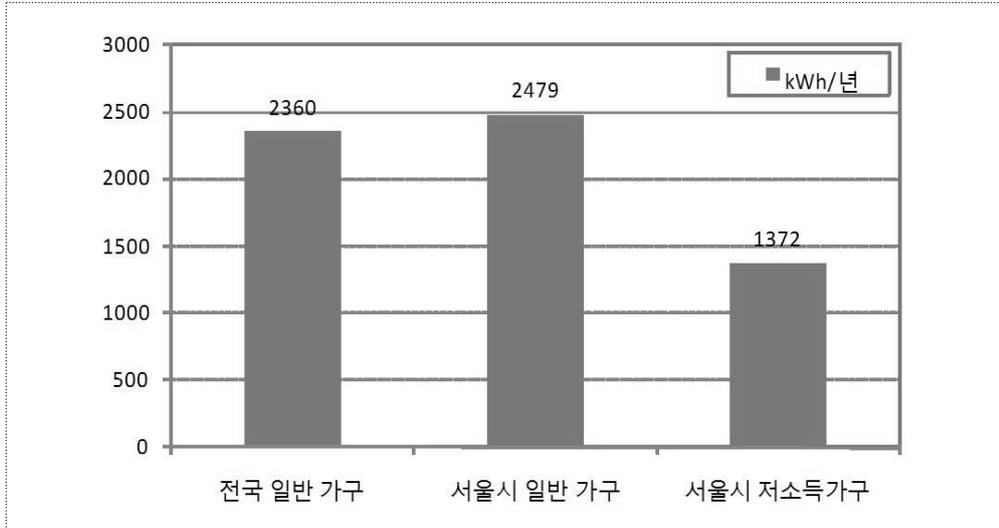
- 저소득 가구의 에너지 소비량은 일반 가구의 63.6%에 불과
 - 월평균 가구소득 125만원 이하인 2분위 이하 무주택가구를 대상으로 한 에너지 소비실태 조사결과 서울시 저소득 가구는 일반가구 대비 63.6%의 에너지를 소비
 - 서울시 일반가구는 가구당 연평균 1.21TOE를 소비하나 저소득 가구는 0.77TOE를 소비
 - TOE는 에너지단위로 석유환산톤(Ton of Oil Equivalent)이라는 의미



자료: 진상현·박은철, 2009, 「저소득가구의 에너지 소비실태 조사·분석」.

[그림 2] 가구당 연평균 에너지소비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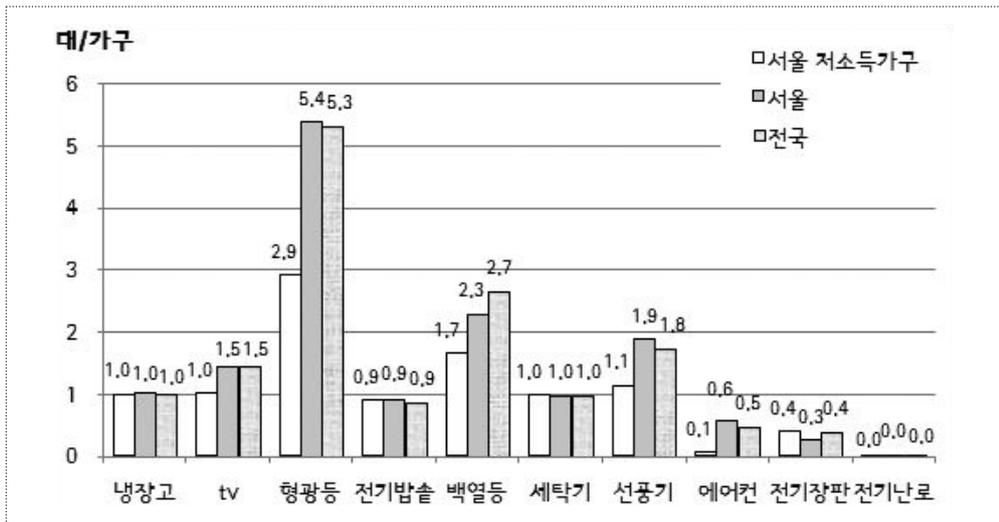
- 전력 소비는 격차가 더 큰 상황
 - 저소득 가구의 전력소비량은 서울시 일반 가구의 55.3%, 전국 일반가구의 58.1% 수준



자료: 진상현·박은철, 2009, 「저소득가구의 에너지 소비실태 조사·분석」.

[그림 3] 가구당 연평균 전력소비량

- 특히, 냉방기기와 조명기기의 보급률에서 큰 격차가 발생
 - 저소득 가구의 경우 냉장고, 전기밥솥, 세탁기 등은 일반 가구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에어컨, 선풍기 등의 냉방기기와 조명기기는 적게 보유



자료: 진상현·박은철, 2009, 「저소득가구의 에너지 소비실태 조사·분석」.

[그림 4] 주요 가전기기의 보급률

지방정부와 연계한 에너지복지 정책의 부재

- 서울시 저소득 가구에 지원된 에너지복지 혜택은 전력 및 가스에 집중
 - 전국 대비 서울시의 지원실적은 단전유예가 33.8%, 도시가스 요금할인이 51.9%로 전력과 가스 중심(<표 3> 참조)
 - 반면에 저소득 가구가 원하는 정책은 가격할인, 단열창호공사, 수혜대상 확대

<표 2> 저소득 가구의 에너지복지 희망정책

구분	쿠폰 지급	가격 할인	도시가스 인입	조명기기 교체	가전제품 교체	난방기기 교체	단열창호 공사	수혜대상 확대	합계
응답수 (비율)	122 (10.2)	338 (28.3)	67 (5.6)	37 (3.1)	119 (10.0)	109 (9.1)	246 (20.5)	158 (13.2)	1,196 (100.0)

자료: 진상현·박은철, 2009, 「저소득가구의 에너지 소비실태 조사·분석」.

- 현재 에너지복지 정책은 수급자 중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수급자에게 생계급여에 포함된 광열비 지원
 - 「에너지기본법」 제4조 제5항은 빈곤층을 포함한 모든 국민에 대한 국가·지방자치단체·에너지기업의 에너지 공급 의무 명시
 - 따라서 「에너지기본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광열비 지원(생계급여의 5.6%)
 - 에너지복지 정책 대부분의 수혜대상도 수급자 중심(<표 3> 참조)
- 지방정부가 배제된 지식경제부 중심의 사업 시행
 - 현행 에너지복지 정책은 대부분 지식경제부 주도 하에 법적 근거 없이 에

너지 공기업에 의해 임의로 지원되는 일시적 시혜성 사업

- 또한 제대로 된 전달체계를 갖추지 못해 개별적·산발적으로 진행되는 상황
 - 특히 지자체와의 협력이 없어 수혜대상이 수급자에게 집중됨으로써 비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에너지빈곤 가구가 존재하는 정책 사각지대가 발생
- 서울시도 단순 불량주택개량 사업인 주거현물급여 집수리사업과 서울형 집수리 사업을 제외하면 고유의 에너지복지 프로그램은 전무한 실정

<표 3> 에너지복지 프로그램의 현황 및 지원실적(2007년 기준)

구분	주관부서	지원항목	지원내용	지원대상	지원실적(서울 / 전국)
전력	한국전력공사	단전유예	혹서기, 혹한기	주거용 전기제한 공급대상가구	18,623가구 / 55,039가구 (33.8%)
		전류제한 공급	220W	주거용 체납가구	-
		요금할인	20% 할인	기초생활수급자·사회복지시설 등	-
가스	도시가스 공급업체	공급중단 유예	동절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요금할인	산업용요금 적용	사회복지시설	11.9억원 / 23억원 (51.9%)
연탄	지식경제부	연탄 가격보조	가격보조 (원가차액)	제한 없음	-
		연탄 쿠폰보조	연탄가 인상시 현물보조	기초생활수급자	-
지역난방	한국지역난방공사	열요금 감면	기본요금 전액감면	임대아파트와 사회복지시설	2.6억원 / 12.3억원 (21.1%)
조명기기	한국전력공사 한국에너지재단	고효율조명기기	무상보급	저소득가구 사회복지시설	29.6억원 / 162억원 (18.2%)
가스안전	가스안전공사 지방자치단체	LP가스 퓨즈 콕	무상설치	미설치가구	0가구 / 2,267가구 (0%)
난방사업	한국에너지재단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무상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8억원 / 88.5억원 (20.3%)
연료지원	한국에너지재단	에너지 긴급지원	현물 무상지원	기초생활수급가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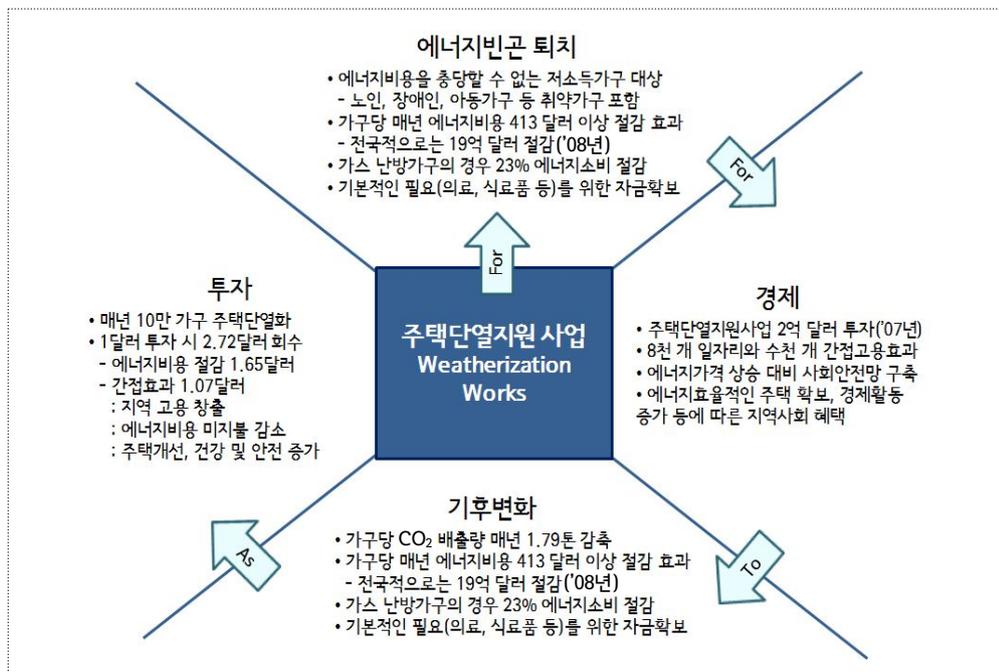
자료: 한국에너지재단, 2009, 내부자료.

II. 해외 도시의 에너지복지 정책

에너지효율 개선과 주거복지를 결합한 뉴욕의 에너지복지 정책

□ 주택단열지원사업(WAP: Weatherization Assistance Progr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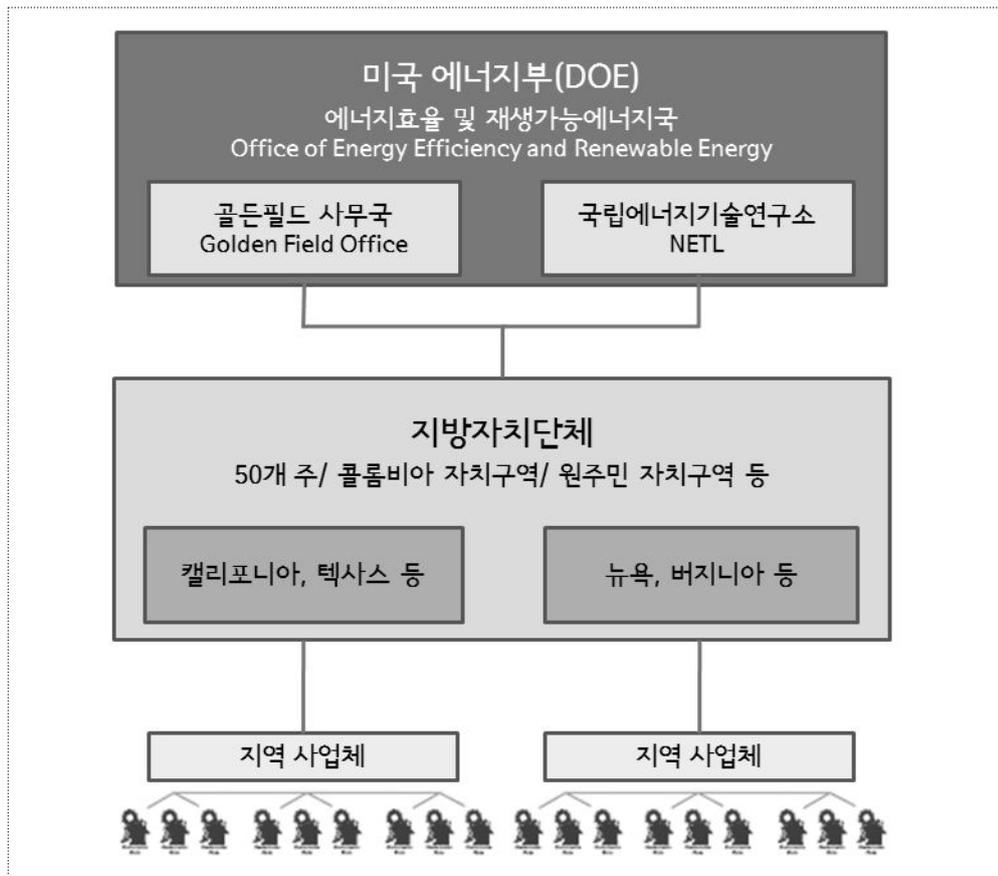
- 주택의 에너지효율을 개선함으로써 저소득가구의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사업이며, 1976년 제정된 「에너지보전 및 생산법」을 근거로 에너지부 주관 하에 실시
- 수혜대상은 소득이 정부 빈곤 기준의 150% 이하인 저소득 가구로서 가구당 2,500달러 한도로 지원(신재생에너지 설치시 3,000달러)
- 1달러 투자로 에너지비용 가구당 1.65달러 절감, 지역사회의 간접편익 2.72달러 발생(석유소비량 연간 1,800만 배럴 절약, 이산화탄소 배출량 가구당 1.79톤 감축)



자료: DOE, 2008, *Weatherization Assistance Program Briefing Book*, p.10-47.

[그림 5] 주택단열지원사업의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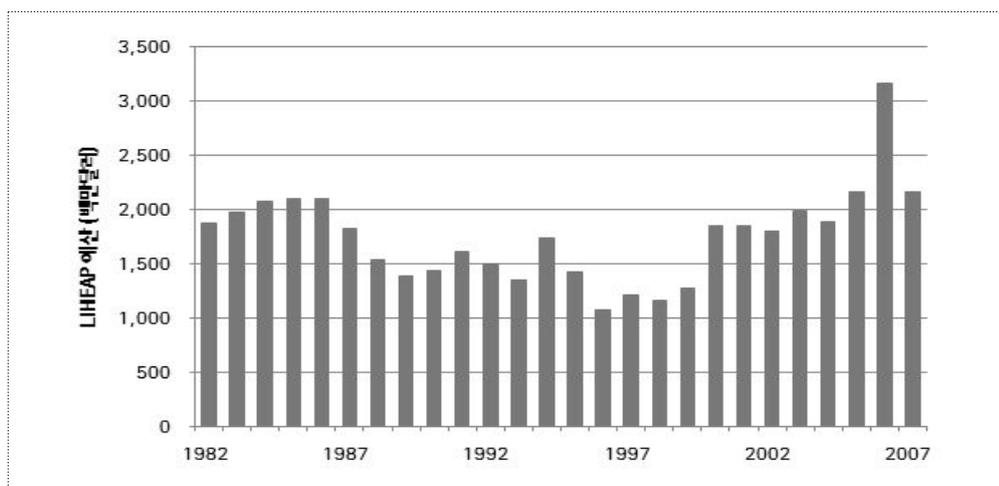
- 에너지부·지방자치단체·지역사업체의 협력체제
 - 에너지부는 예산배분, 대상자 선정 가이드라인 제시, 에너지효율 개선 수단 개발 및 보급, 에너지절약 관련 자료 구축, 지역사업체에 기술훈련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
 - 지방자치단체는 각 주에 적합한 사업규칙 및 대상자 선정기준을 설정하고 지역사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며, 사업 시행과정을 점검
 - 지역사업체는 신청서를 접수하고 사업대상자를 선정하며, 가구별로 가장 효율적인 사업을 결정해 에너지 진단, 사업시행 등의 서비스 제공



자료: DOE, 2008, *Weatherization Assistance Program Briefing Book*, p.1-8.

[그림 6] 주택단열지원 프로그램의 추진체계

- 뉴욕은 다른 주에 비해 노후건물과 임차건물이 많고 저소득가구들이 낡은 임차건물에 거주하는 특징이 있어 세입자를 일정 비율 포함시켜 사업을 추진
 - 1970년 이전 건축물이 미국 평균 49%인데 뉴욕주는 74% 수준
 - 뉴욕주 건물의 47%가 임차건물인데, 저소득 가구의 70%가 임차건물에 거주
- 저소득가구 에너지지원 프로그램(LIHEAP: Low Income Home Energy Assistance Program)
- 저소득가구에게 비상시 에너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981년에 제정된 「옴니버스 예산조정법」을 근거로 보건복지부 주관 하에 실시
 - 2007년 예산은 21억 달러로 총 580만 가구가 혜택을 받았으며, 2008년에는 51억 달러로 증액될 예정
 - 뉴욕주는 중위소득의 60% 이하를 대상가구로 선정(취약가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사회복지프로그램 수혜가구는 자동으로 포함)
 - 미국 시민뿐만 아니라 자격을 갖춘 외국인도 선정 가능



자료: L. Perl, 2007, *The Low-Income Home Energy Assistance Program(LIHEAP)*.

[그림 7] 미국 LIHEAP 예산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이 강화된 런던의 에너지복지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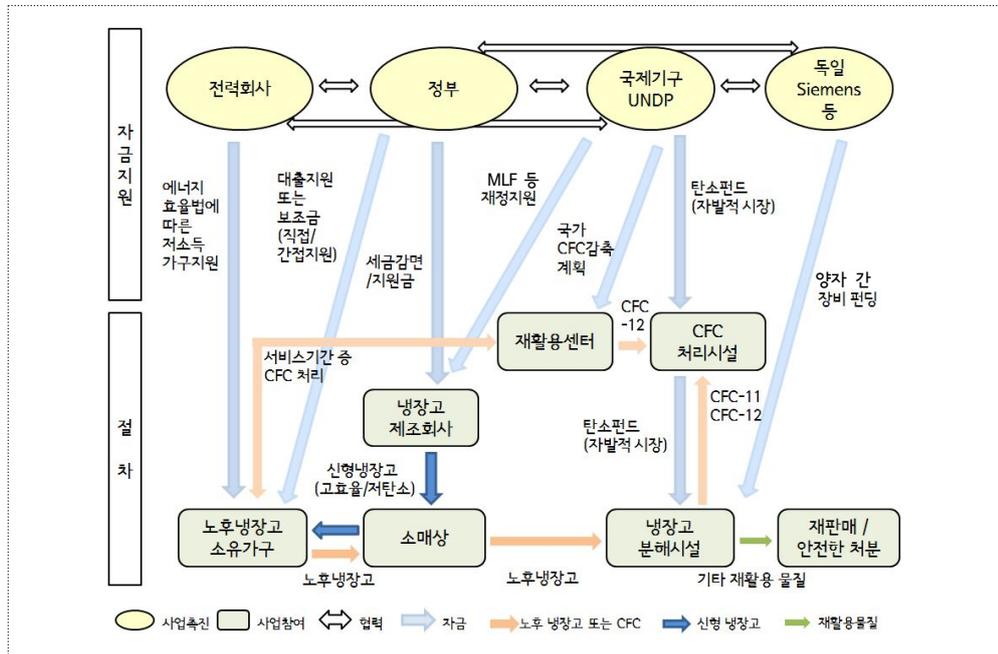
- 영국 정부는 「따뜻한 가정 및 에너지보전법」을 근거로 2001년 에너지빈곤 전략을 수립
 - 주요 에너지복지 프로그램
 - Warm Front 프로그램: 저소득가구 대상 난방기기 교체, 이중벽 단열공사, 다락방 단열공사 등의 사업(최근에는 태양열을 이용해서 난방을 공급하는 사업도 포함)
 - 탄소배출감축목표(Carbon Emissions Reduction Target): 에너지업체들은 에너지효율 개선 의무 가운데 40%를 취약가구 주택에서 달성하도록 규정
 - Decent Home 기준: 모든 사회주택(social housing)이 적절한 수준의 난방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강제하기 위해 Decent Home 기준을 규정(효율적인 난방시스템과 단열기준을 필수 요소로 제시)
 - Warm Zones 전문기업: 국가에너지행동(National Energy Action)에 의거해 운영되는 비영리회사로 저소득 가구와 취약가구에 에너지효율 개선을 포함한 각종 지원사업 실시
 - 정부는 에너지공급업체들과의 협약을 통해 사회적 지원사업을 독려
 - 2007년 현재 5,600만 파운드를 지원했으며, 70만 수혜가구 가운데 10%가 에너지빈곤에서 벗어난 것으로 추정
- 런던시는 2010년까지 취약계층의 에너지빈곤을 해소하고, 2016년까지는 모든 가구의 에너지빈곤을 해소한다는 목표를 수립

- 런던시는 주거비용이 높은 특징을 반영해 중앙정부와 달리 에너지빈곤 기준에서 주거비용을 제외한 소득을 사용함으로써 정책 수혜대상을 확대
- 중앙정부의 기준을 적용할 경우 런던시의 에너지빈곤 가구는 전체 가구의 10%로 9대 권역 중 가장 낮지만, 자체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9대 권역 중 5위로 상승(에너지빈곤가구 비율 24%)
- Warm Front, 런던 Warm Zone, CERT 프로그램, Decent Home 등 중앙정부와 연계된 프로그램 실시

에너지복지 사업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브라질

□ 저효율 구형 냉장고를 고효율 신형 냉장고로 교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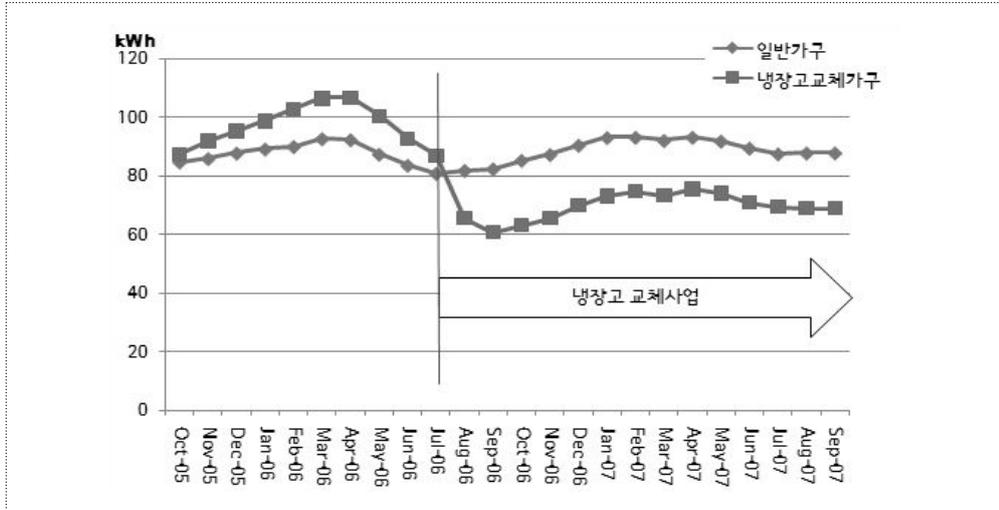
- 2002년에 제정된 「에너지효율법(Energy Efficiency Law)」에 의거해 매년 15만대의 구형 냉장고를 고효율 신형 냉장고로 교체
- 중앙정부는 전력회사에게 순이익의 0.5%를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에 사용하고 사업총액의 50%는 저소득가구의 개선사업에 사용하도록 의무화
- 수거된 냉장고에 포함된 프레온 가스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환경부, 전력회사, UNDP, 민간기업 등이 협약을 체결해 관련 장비 및 기술 지원



자료: U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2007, Proceedings of the Workshop "Improving Electricity Service for the Urban Poor", p.8.

[그림 8] 브라질의 냉장고 교체사업 추진 절차

- 에너지비용 절약, 온실가스 감축, 지원금 절감이라는 1석 3조의 효과 달성
 - 가구당 연평균 에너지비용 25달러 절약
 - 280L 냉장고 교체시 전력소비 55% 절감
 - 온실가스인 프레온을 안전하게 제거해 냉장고 대당 이산화탄소 3톤의 온실가스 저감 효과
 - 탄소배출권 판매를 통한 수익도 창출
 - 저소득가구의 에너지비용이 줄어들어 정부의 저소득가구 지원금이 절감
 - 가구당 지원금 월평균 3.8달러 절감



주: 일반가구(157,376가구)와 냉장고 교체가구(573가구)의 월평균 냉장고 전력소비량
 자료: Coelba, 2007, "Coelba's Income Generation and Energy Efficiency Projects in Low-income Communities"
 p.11. 수정.

[그림 9] 냉장고 교체사업 전후의 전력소비

III. 서울형 에너지복지 전략

서울형 에너지복지 실천전략을 우선 수립

- 정부는 에너지 기본권이 포함된 「에너지복지법」을 현재 추진 중
 - 정부는 2007년 5월 10일 에너지복지 원년을 선언하며, 한전과 가스공사를 포함한 25개 에너지기업과 공동으로 에너지복지현장을 채택해 2016년까지 120만 에너지빈곤 가구를 제로화한다는 목표를 제시
 - 2009년 녹색성장 5개년계획에서는 에너지빈곤을 해소하기 위해 최저에너지 사용기준을 기본권으로 정립해 에너지빈곤층을 파악하고 에너지복지 전달체계를 효율화하겠다는 계획도 발표
 - 지금은 지식경제부를 중심으로 에너지복지정책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에너지복지법」 제정을 추진 중
- 서울시의 특성을 반영한 서울형 에너지복지 실천전략의 수립이 필요
 - 중앙정부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 정책을 수립하는 뉴욕이나 런던처럼 서울시의 특성을 반영한 서울형 에너지복지 실천전략의 수립이 필요

사업 유형	추진 전략
주택 효율향상을 통한 난방에너지 개선	· 단열개선
가전제품 효율향상을 통한 전력소비 절감	· 협력형 사업추진 · 공익형 사업추진
에너지공급을 통한 에너지복지 개선	· 도시가스 접근성 개선 · 신재생에너지 보급
에너지복지 전달체계 구축	· 중앙정부의 법적 기반과 예산 마련 · 서울시의 에너지복지정책 전달 및 집행

주택 효율향상을 통한 난방에너지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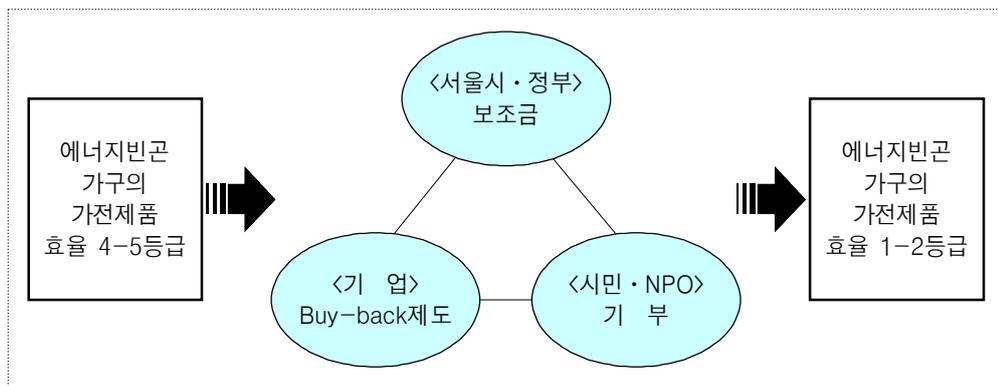
- 에너지빈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난방 복지를 최우선 과제로 시행
 - 난방은 주택에서 에너지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분야로 혹한기 난방부족이 가장 시급하다는 점에서 에너지복지 정책은 난방 확보에 우선 집중

-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한 주택 단열개선
 - 저소득 가구는 주로 낡은 임대건물에 거주하고 있어 난방 효율이 낮은 실정
 - 저소득 가구의 62.7%가 보증부 월세에 거주하며, 1980년대 이전에 지어진 주택이 51.7%
 - 주택 단열개선사업은 저소득가구의 낮은 에너지효율을 개선함으로써 에너지 비용부담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며, 지역의 고용도 창출
 - 미국, 영국, 아일랜드 등에서는 이미 WAP, Warm Front, Warmer Home 등의 주택 단열개선사업이 추진 중

가전제품 효율향상을 통한 전력소비 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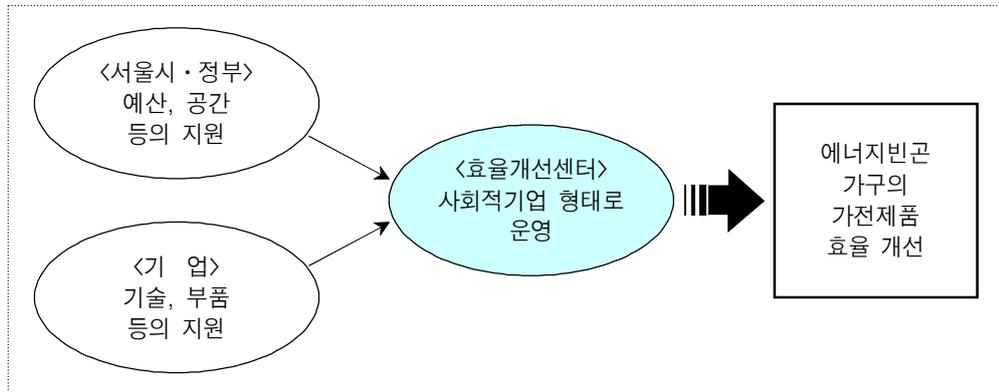
- 사업의 기대효과가 가장 큰 냉장고를 우선 교체
 - 에너지소비량과 효율개선 정도를 고려했을 때 전력소비가 많은 냉장고를 중심으로 가전제품 교체사업의 시행
 - 저소득가구의 냉장고 교체사업은 미국에서도 WAP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바 있으며, 최근 브라질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사업으로 탄소배출권을 획득한 사례가 있으므로 우선적으로 시행 필요

- 기업과 공동으로 가전제품 효율개선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적합한 사업 추진체계 마련이 필수
 - 협력형 사업추진(안) : 서울시와 중앙정부가 포함된 공공부문은 보조금을 지원하고, 기업은 Buy-back 제도 등을 활용해 교체사업에 참여하며, 시민과 NPO는 기부를 통해 동참하는 공공·민간·시민사회의 협력형 사업
 -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획득한 탄소배출권도 협력형 사업의 틀 안에서 배분 가능



[그림 10] 가전제품 효율개선사업의 협력형 사업추진(안)

- 공익형 사업추진(안) : 신형으로 교환하기보다는 부품교체를 통해 효율을 개선하는 방식. 공공부문이 효율개선센터를 설립한 뒤 민간기업이 전문지식과 기술을 지원하는 사회적기업 형태의 사업방식
 - 지역사회에 고용을 창출하는 등 공익성이 높다는 장점과 경제성 확보 및 제도설계가 어렵다는 단점이 존재



[그림 11] 가전제품 효율개선사업의 공익형 사업추진(안)

에너지공급을 통한 에너지복지 개선

□ 저소득 가구의 도시가스 접근성 개선

- 난방 및 취사용으로 사용되는 도시가스는 LPG, 등유 등과 비교했을 때 가장 저렴한 연료이므로 낙후지역이거나 비용이 없어서 도시가스를 사용하지 못하는 저소득가구에 대해서는 지원이 필요
- 서울에서 도시가스를 공급 받지 못하는 저소득가구의 비중은 2.8%
- 장기적으로는 도시가스 배관망을 확대하고, 기설치 지역의 저소득 가구는 인입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

□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한 에너지빈곤 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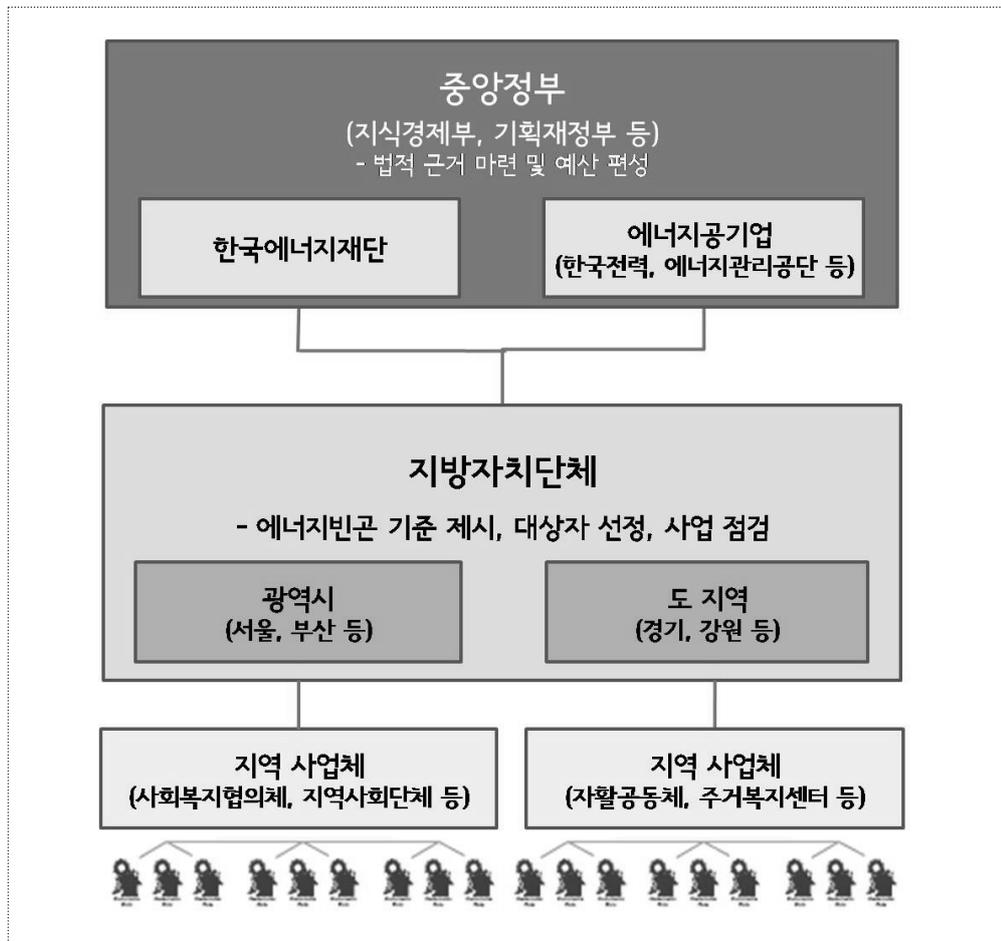
- 추가적인 에너지비용 없이 지속적인 에너지 공급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가 배출되지 않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지원할 경우 근본적인 차원에서 에너지빈곤 해결이 가능

- 영국에서는 Warm Front 사업의 일환으로 저소득가구의 태양열난방 보급사업을 추진중. 국내에서도 사회복지시설뿐만 아니라 저소득가구에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는 사업이 필요

지방정부를 매개로 한 에너지복지 프로그램의 전달체계 구축

- 중앙정부는 에너지복지 정책의 법적 기반과 예산을 마련
 - 현재 추진 중인 「에너지복지법」을 제정하거나 기존 법(에너지기본법 등)을 수정하는 등의 법적 기반 마련이 필수
 - 에너지공기업과 한국에너지재단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현행 에너지복지 프로그램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전달체계 안에 포함시키는 추진체계 필요
 - 소요재원의 일부를 에너지공기업이 부담하는 방안 검토
- 서울시는 에너지복지 정책을 현장에서 집행하고 전달하기 위한 기반 구축
 - 「에너지복지조례」를 새로 제정하거나 기존의 「에너지기본조례」에 에너지복지 정책 관련 내용 추가 필요
 - 에너지빈곤 개념은 현재 「에너지기본조례」에 추가(2009년 2월 10일)
 - 서울시 저소득 가구의 실태조사를 토대로 런던시처럼 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에너지빈곤 기준정립이 필요
 - 현행 「에너지기본조례」의 에너지빈곤층 기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은 지역적 특성이 미반영
 - 정책대상자 발굴을 통한 에너지복지 사각지대의 최소화

- 동주민센터의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에게 정책대상자 발굴, 홍보, 신청대행 등의 업무를 부여하여 정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협력



[그림 12] 에너지복지 프로그램 전달체계(안)

진상현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
02-2149-1134
upperhm@sdi.re.kr

박은철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
02-2149-1258
parkagfe@sdi.re.kr